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16

발의연월일: 2022. 8. 1.

발 의 자:김승원·강득구·강준현

김의겸 · 김주영 · 서삼석

유정주 • 윤건영 • 윤재갑

이정문 · 임오경 · 주철현

최강욱 • 한병도 • 홍정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체육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장애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이나 생활체육 모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생활체육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조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장애인 생활체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장애인 생활체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생활체육단체 또는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10. 장애인 생활체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u>10.</u> (생 략)	<u>11.</u>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 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0조의2(장애인 생활체육의 지
	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
	진하고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
	<u>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u>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u>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
	여 장애인 생활체육단체 또는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u>할 수 있다.</u>